공고 제 1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3일

성복동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유 *원	유 *원 1930-02-14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(성복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6-11-12